## □ 부산항 공용부두 지정장치장 화물보관 요율표

## 경 비 료 요 율 표

1. 장치 경비료 : 부두 장치장(창고, 야적장, CY)에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징수하는 경비료 가. 일반화물

구 분	종가제		종량제		00H0 HIH	
	수입품	수출품	수입(일반잡화)	수출	요율적용 방법	
1일(당일)	1.250/1,000	0.077/1,000	24원/톤	13원/톤	○ 종가제(수입품) - 기본료(1일) - (기기 기계()) (1987/191	
15일까지	기본일수(1일) 초과시 매 1일 2%씩 증가	0.081/1,000	25원/톤	13원/톤	: (감가+관세)×요율×1일 - 2~15일 : 기본료×[1+(0.02×경과일수)]	
30일까지	0.120/1,000	0.082/1,000	26원/톤	14원/톤	- 16일부터는 (감가+관세)×요율× 해당 장치일수 적용	
45일까지	0.129/1,000	0.085/1,000	28원/톤	14원/톤	<ul><li>○ 종가제(수출품)</li><li>- 감가 X 요율 X 일수</li><li>○ 종량제 : 톤수 X 요율 X 일수</li></ul>	
46일이상	0.140/1,000	0.100/1,000	29원/톤	15원/톤	- 기본일수 12일적용 ○ T/S화물 : 수입품 요율 적용	

○ 출고건당 10,000원 미만은 10,000원 적용

나. 컨테이너(종량제)

구 분	수입품(T/S포함)	수출품	계산 방법
5일까지(기본)	40원/톤	23원/톤	○ 종량제 : 톤수 X 요율 X 일수
10일까지	46원/톤	26원/톤	- 톤수적용 : 컨테이너 외형 톤 적용
11일 이상	53원/톤	32원/톤	○ 기본일수 5일 적용

## 다. 철재류 등(대량 화물)

구 분	수입품(T/S포함)	수출품		
면 적(㎡)	1,723원/월	○ 계산방법 : 사용면적(㎡) X 요율 X 장치기간(월 기준)		

○ 단위 면적당 요율에 따라 적용하는 경비료

2. 하선경비료 : 하선장소가 부두로 신고된 화물 중 부두내 창고나 야적장에 장치하지 않고 보세운송 등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화물(차상반출포함)에 적용.

구 분	요 율	계산방법	비고
7일까지(기본)	23원/톤	톤수 X 23원 X 7일	
기본일수 경과시 (할증료 포함)	매일 2원/톤	톤수 X [23원+(2원 X 7일 초과일수)] X 장치일수	일수적용 : 하선반입 신고일부터 반출되는 날까지
최저 경비료	B/L 당 10,000원 미만은 10,000원 적용		

## ◎ 부대상황

- 컨테이너 외형 용기 톤수를 적용한다. (10피트 : 16톤, 20피트 : 32톤, 40피트 : 64톤, 45피트 : 72톤)
- 화물량 최저단위 : B/L당 총화물이 1톤 미만은 1톤으로 한다.
- 경비료는 종가제와 종량제 중 많은 쪽을 적용한다.
- 톤수는 용적톤과 중량톤 중 많은 쪽을 적용하되 중량톤은 1000kg, 용적톤은 1.133㎡를 1톤으로 한다.
- 부가가치세는 공급액의 10%를 화주로부터 별도 징수한다.
- 3. 일반경비료 : 하선장소가 부두가 아닌 타장소로 신고되어 직송되는 화물에 적용

구 분	일반잡화	양곡·고철	컨테이너 찬것	수입원목	냉동어	
					수 입	연안내국
요 율	31	35	25	53	115	115

○ 계산방법 : 톤수×요율=경비료 (B/L별 최저경비료가 2,000원 미만 2,000원 적용)

단, 동일선박 동일화주일 경우 1B/L 적용

※ 하선경비료 징수화물에 대하여는 일반경비료를 징수치 않음